

한국 대부업법 규제체계

변호사 박현근(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I. 서론: 대부업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1. 역사적 배경

한국의 대부업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1998년 1월 13일, IMF의 권고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이자율 제한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리대금업 및 과도한 채권추심 등 다양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였고, 서민금융 시장은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대부업법은 지하경제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을 등록제도를 통해 양성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대부행위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계속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자제한법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되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입법 목적

대부업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를 통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서민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금융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II. 대부업의 정의와 등록제도

1. 대부업 및 관련 개념의 정의

대부업법 제2조는 대부업 관련 핵심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부에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가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대차보다 넓은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금전이 교부되고 이자율과 변제기가 명확히 산정되는 모든 거래를 포괄합니다.

판례는 '업으로' 한다는 것을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단순히 인적·물적 시설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대부의 반복·계속성, 영업성의 유무, 행위의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

부업자와 별도로 등록을 받아야 하며,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대출모집인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여신금융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부업법의 일부 규정(특히 채권추심 관련)을 적용받지만, 등록 의무는 면제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025년 개정을 통해 매우 강력한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2. 등록제도의 구조

대부업법 제3조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제도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등록****(제3조 제1항): 일반적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대부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제3조 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첫째,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입니다. 둘째,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입니다. 셋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입니다. 넷째,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입니다. 다섯째, 자산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여섯째,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입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제3조 제6항),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3조의2).

3. 등록요건의 강화

대부업법 제3조의5는 등록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개정을 통해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기자본 요건****: 2025년 개정 전에는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이 면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최소 자기자본

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법인의 경우 3억원, 개인의 경우 1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자는 오프라인의 경우 3천만원, 온라인의 경우 1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3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자본 요건 사항은 '무늬만 등록 대부업체'를 줄이고, 자본 여력을 갖춘 건전한 대부업자만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고정사업장, 인력, 전산설비****: 2025년 개정으로 대부업을 위한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력과 전산설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의4).

****결격사유****: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의 추가 요건**:** 법인인 경우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개정 전 1년에서 강화), 최근 5년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중 요건 유지**:** 2025년 개정으로 등록요건은 등록 시점뿐만 아니라 등록기간 중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임원 등의 자격 제한

대부업법 제4조는 대부업자의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부업법, 형법의 특정 조항(상해, 폭행, 체포, 협박, 주거침입, 공갈 등 채권추심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으며(제4조 제2항), 임직원이 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직을 잃습니다(제4조 제3항).

III. 대부계약의 체결과 이자율 규제

1. 대부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대부업법 제6조는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의무**:**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

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정보,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 대부이자율(연 이자율 포함), 변제기간 및 방법, 변제 계좌번호, 부대비용, 손해배상 또는 강제집행 약정, 보증계약 내용, 조기상환조건, 연체이자율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설명의무****: 대부업자는 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2항).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조 제3항, 제4항).

****서류 보관 의무****: 대부업자는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 체결일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5항).

****열람 및 발급 의무****: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6조 제6항).

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의무

대부업법 제6조의2는 대부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필 기재 대상은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입니다.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를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또는 음성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및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필 기재로 간주됩니다(제6조의2 제3항).

판례는 자필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린 상황에서 대리인이 근보증서에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자필서명이나 적법한 위임에 따른 대행이 아니므로 근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은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전자문서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수신자가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잉 대부의 금지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의 과잉 대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부채 확인 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증명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채잔액증명서, 재산권리증명서류, 신용정보조회 결과 등을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2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은 100만원, 그 외는 300만원)에는 예외입니다(제7조 제1항).

****변제능력 초과 대부 금지****: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제7조 제2항).

다만 판례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며,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22201 판결).

****용도 외 사용 금지****: 제출받은 서류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 제4항 제2호).

4. 담보제공 확인 의무

대부업법 제7조의2는 대부업자가 제3자 명의의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도용이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총자산한도 규제

대부업법 제7조의3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자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6.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제8조는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고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8조 제1항). 이는 2002년 제정 당시 연 70%에서 점차 인하되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이자 개념의 확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 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됩니다(제8조 제2항).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징수한 돈은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체이자율 제한****: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조 제3항).

****초과 이자의 효력**:**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초과 부분에 대해 무효입니다(제8조 제4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5항).

****선이자 공제의 처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제8조 제6항).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은 선이자를 공제하고 약정 대부기간 경과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선이자 중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았더라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반 시 처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 제2항 제2호).

****이자율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은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

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처벌할 수 있으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도 각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7.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신설된 대부업법 제11조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자 수취 금지 및 이자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제11조 제1항). 이는 기존에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로 했던 것과 달리, 이자 약정 전체를 무효(0%)로 하는 것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입니다.

****상법 규정 배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상사채무의 이자) 및 제55조(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상법상 법정이율조차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 제2항).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통해 더 두텁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대부계약의 무효 및 취소 사유

대부업법 제8조의2는 대부계약의 효력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사유****: 다음의 경우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대부제공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

과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첫째,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포기, 강제취업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그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입니다. 셋째, 대부계약에 채권추심법상 금지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넷째,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입니다.

****취소 사유****: 다음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둘째,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가 면제되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 셋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중요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IV. 대부업의 영업 규제

1. 대부조건의 게시 의무

대부업법 제9조 제1항은 대부업자로 하여금 영업소마다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 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정으로 게시사항에 '등록증'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대부업자가 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게시의무가 대부업자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영업과정에서의 준수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 1275 판결은 광고나 구비된 장소, 중개수수료, 일정 이자율 등이 없더라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며, 대부업법 제9조의 게시·광고 의무는 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일 뿐 이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부업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광고 규제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광고 필수 포함사항****(제9조 제2항, 제3항):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67 결정은 이러한 광고 규제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소는 '대부조건 등'의 의미는 대부업자가 자신의 용역에 관한 대부계약을 소비자와 맺기에 앞서 내놓는 중요한 요구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가리키며,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는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광고 방식 규제****(제9조 제4항): 대부업자등은 광고 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호는 상표보다 크게 표시해야 하며,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자율, 부대비용, 경고문구는 상호 글자와 같거나 크게 하고 다른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광고 시간 제한****(제9조 제5항): 2015년 신설된 이 규정은 대부업자등이 방

송을 이용한 광고를 할 때 평일은 오전 7시~9시 및 오후 1시~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광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무분별한 대출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고 주체 제한****(제9조의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1029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공범 관계 없는 제3자의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제9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제9조의3): 대부업자등은 대부이자율,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해 대부할 대부업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가 다른 대부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보면, 금리에 대해 실제와 다른 기간을 표시하거나, 신용등급 제한 없이 대출해주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무이자 대출기간을 과장하는 등의 행위가 제재받았습니다.

3. 불법 대부광고 차단 제도

대부업법 제9조의6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지 대상****(제9조의6 제1항): 시·도지사 등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나 대부업법 또는 채권추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 후 중지 대상****(제9조의6 제2항): 등록된 대부업자가 광고 방법을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시·도지사등은 먼저 광고 중단을 명하고, 그 명을 따르지 않으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개정으로 이 제도는 불법 대부광고뿐만 아니라 불법 채권추심 및 불

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욕설·협박,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림, 개인정보 누설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접수되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라인 등 SNS·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고용 제한

대부업법 제9조의5는 대부업자등이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 금지 대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부업법, 형법,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 다른 대부업자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등입니다.

****업무 위임·대리 금지**:** 대부업자등은 위 고용 금지 대상자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폭력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고용뿐 아니라 위임·대리 등 실질적으로 대부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5. 불법사금융과의 거래 금지

대부업법 제9조의4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간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 양수·추심 금지****(제9조의4 제1항):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부인되지 않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2가단116501 판결).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제9조의4 제2항):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양도 대상자 제한****(제9조의4 제3항):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

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부채권이 불법대부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과도한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V. 대부중개업의 특별 규제

1. 중개수수료 규제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대부중개업의 핵심인 중개수수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 금지****(제11조의2 제2항):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 지급 중개수수료 상한****(제11조의2 제3항):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이 1%p 인하되어, 현재는 500만원 이하 3%, 500만원 초과 2%입니다.

****여신금융기관 지급 중개수수료****(제11조의2 제4항):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 상한이 준용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제11조의2 제5항):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기관이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지급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개수수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탈법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은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해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이자에 해당하고 선이자 공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17001 판결은 P2P 대출에서 플랫폼이용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의 일종으로서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법 수취 중개수수료의 반환****(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 8. 30. 선고 2012나511 판결):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제11조의2 제2항 위반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므로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대부중개업자의 안내 의무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11조의2 제7항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배상책임

대부업법 제11조의3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한 경우의 책임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배상책임****(제11조의3 제1항):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

업자등이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면책사유****: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대부중개업자등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구상권 행사****(제11조의3 제2항): 위 배상책임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부중개 과정'에서의 대부업법 위반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12093 판결은 대출금 미지급은 대부중개가 완료된 이후의 대부계약상 채무 이행 문제로서 대부중개 과정의 문제가 아니므로 제11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VI. 대주주 거래 제한과 손해배상책임

1.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대부업법 제10조는 2015년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제10조 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부업자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신용공여'는 대부,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0누51909 판결은 신용공여를 '경제적 지급능력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거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보고 및 공시 의무****(제10조 제2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 조치****(제10조 제3항, 제4항):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본 변동, 대주주 변경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전면 금지****(제10조 제7항):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자금이 대부업체를 통해 비금융계열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법령의 대주주 거래제한 규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업체가 대기업 또는 금융회사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대부업법 제11조의4는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제11조의4 제1항):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 포함)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의무****(제11조의4 제2항):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 금액은 시·도지사 등록의 경우 1천만원, 금융위원회 등록의 경우 5천만원입니다.

판례는 제11조의4의 '거래상대방'을 대부 상대방 채무자만이 아니라 투자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141181 판결은 P2P 대출에서 투자자들이 대부업 회사가 대부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상태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제11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5154510 판결은 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준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없음에도 고의로 채무자에게 추심한 경우 위법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VII. 이용자 보호를 위한 특별 제도

1. 이용자 보호기준과 보호감시인

대부업법 제9조의7은 2016년 신설된 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해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기준 제정 의무****(제9조의7 제1항):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보호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10억원, 그 외 대부업자는 5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경우 해당됩니다.

****보호감시인 선임 의무****(제9조의7 제2항, 제3항):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조사·감사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호감시인의 자격****(제9조의7 제4항): 보호감시인은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 또는 법학 분야 석사 이상으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획재정부·금융위·금감원·증권선물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임·퇴직 후 5년이 지난 자 등이어야 합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임직원 교육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차별 금지

대부업법 제9조의8은 2020년 신설된 조문으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상환 능력, 담보 가치 등 대출 심사와 관련된 합리적 기준에 따른 차등 계약 조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으나,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대부업법 제9조의9는 2025년 신설된 조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합니다.

****대부 제공 목적 외 처리 금지****(제9조의9 제1항, 제2항):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중개업자도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범죄 이용 목적 정보 유통 금지****(제9조의9 제3항):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하여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9조 제2항 제4호). 이는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추심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

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VIII. 한국대부금융협회

1. 협회의 설립과 법적 성격

대부업법 제18조의2는 2009년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협회는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법정 협회입니다.

협회는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협회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기관은 아니며, 법률에 의해 특정 공익적 기능이 부여된 민간의 자율규제기구에 해당합니다. 대외적 강제력은 제한되며, 회원에 대한 구속력은 정관·규정 및 가입계약을 통해 사법상 형성됩니다. 다만 감독 당국과 연계하여 보고의무, 검사·감독 협조, 정책 집행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협회의 역사적 의의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한국 금융정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960~1980년대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위해 금융자원을 정책금융에 집중하였으나, 금융 억압 하에서 서민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었고 그 공백을 사금융이 메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은 개방과 구조조정,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습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은 대부업을 제도권 규제 아래 두려는 첫 시도였으나, 법률만으로는 업계의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습니다. 2009년 설립된 협회는 법정 협회로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중 목표로 삼았습니다.

협회는 2012년 광고심의제도 시행으로 과도한 영업 관행을 규율하였고, 2015년 대부관리사 자격을 신설하여 업계의 전문성을 제도화하였습니다. 2016년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0년 손해배상 책임 공제제도와 온라인 아카데미는 디지털 환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체제에 대응하는 기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협회가 단순한 업계 이익단체가 아

나라, 자율규제 기구이자 준공적 정책 파트너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3. 협회의 업무

대부업법 제18조의3은 협회의 법정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업무**:** 첫째, 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입니다. 둘째,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입니다. 셋째,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입니다. 넷째,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8조의3 제2항). 이는 협회 내부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

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협회의 가입

대부업법 제18조의5는 협회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및 법인인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대부업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거부 금지**:**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회비 징수**:**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협회에 대한 감독

대부업법은 협회에 대한 엄격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제18조의7): 시·도지사의 대부업 교육업무는 협회에 위탁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등록·등록갱신, 요건심사, 자격심사, 변경등록·폐업신고, 보고·자료 제출, 시정명령, 실태조사 등) 중 상당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됩니다.

****협회 검사****(제18조의9):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며, 법령 위반 사실이 있으면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협회 재산상황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회원사 회비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부당한 자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협회에 대한 조치****(제18조의10):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협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일부 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회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회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2년 9월~10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의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협회에 기관경고, 당시 협회장에 문책경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 주의적 경고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대부업법 제18조의10이 실제로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제18조의11):** 금융위원회는 협회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협회 또는 그 임직원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특례**(제18조의12):** 처분 또는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X. 결론: 한국 대부업법의 특징과 시사점

1. 한국 대부업법의 주요 특징

한국의 대부업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등록제를 통한 양성화**:** 대부업법은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사금융을 등록 제도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으로 이원화된 체계는 대부업자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엄격한 이자율 규제**:** 최고이자율 연 20%는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자 개념을 확대하여 각종 명목의 금전 징수를 이자로 간주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제재**:** 2025년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0%)로 하고, 상법상 법정이율 적용도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혁신적 조치입니다.

****넷째, 금융이용자 보호 장치의 다층화**:** 계약서 교부·설명 의무, 자필 기재 의무, 과잉 대부 금지, 담보제공 확인 의무, 중개수수료 규제,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 보증금 예탁 등 다층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 차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대부업체가 계열사 지원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율규제 기구의 활용**:** 한국대부금융협회를 법정 협회로 설립하여 업계의 자율규제, 교육, 민원처리, 광고심의, 보증금 예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부 규제와 업계 자율규제를 적절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광고 규제의 체계화**:** 광고 필수 포함사항, 광고 방식, 방송광고 시간 제한, 광고 주체 제한,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광고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 유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응**:**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 체결, 대부중개시스

템 활용 대부중개업,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별도 자기자본 요건,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 추심 규제 등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개정의 방향

2025년 개정은 대부업법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요건 상향****: 모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부과하고, 그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무자본 또는 영세 자본으로 대부업에 진입하여 불건전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등록기간 중 요건 유지 의무****: 등록요건을 등록 시점뿐만 아니라 등록기간 중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자계약 전부 무효****: 기존에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로 하던 것을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변경함으로써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이득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부 제공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범죄 이용 목적 정보 유통 금지 등을 신설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추심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자의 안내 의무 신설**:**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대부업 이용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일본 및 대만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대부업법은 일본 및 대만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편입 방안**:** 한국은 등록제를 통해 음성적 사금융을 양성화하되, 엄격한 요건과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금융을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편입시키는 현실적 접근법입니다.

****이자율 규제와 불법사금융 제재의 균형**:** 한국은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되,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간의 명확한 구별을 두

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의 다층화****: 계약 단계에서의 보호(계약서 교부·설명 의무, 자필 기재), 영업 단계에서의 보호(과잉 대부 금지, 광고 규제), 사후 구제 단계에서의 보호(손해배상책임, 보증금 예탁) 등 단계별로 다층적인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율규제 기구의 활용****: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같은 법정 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병행하는 방식은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디지털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자계약, 온라인 중개, P2P 대출 등 새로운 형태의 대부업에 대해 기존 규제 체계를 확장·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벌 또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규제****: 한국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제도는 대부업체가 계열사 지원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용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4. 향후 과제

한국의 대부업법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금융의 경계 관리****: 자기자본 요건 강화로 영세 대부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규제의 실효성 제고****: 판례가 보여주듯이 대부업자와 중개업자가 결탁하여 중개수수료를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P2P 대출 등 신종 대부 형태에 대한 규제 보완****: 플랫폼이용수수료 등 새로운 명목의 비용 징수가 이자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인식 제고****: 대부업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협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것

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운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대부업법에 대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대부업 규제체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25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편입,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및 대만의 변호사 여러분께서 각국의 대부업 규제를 검토하시는 데 이 발제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